

공
고

기 안 용지 35

문유기호
문서번호

보이 1436

(전화번호) 430

전길수

국장

기획사단

제작기관

보건사회국장

시행일자

2000년 1월

보건 2과장

103-2/20

기

식품위생기장

103-2/20

이

303-2/20

국안창조

기

71년도 조리사 자격시험 실시

제 1안 (내부결재)

1. 당시 시행 71년도 제1회 조리사 자격 시험을 조리사에 관한 규칙 제 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 기획서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며,

2. 이에 소요되는 예산(사업, 세율) 집행은 공고로 응시자 품수에 따라 산출하되, 공고로는 공고즉시 청구에 의하여 적용되자 합니다.

첨부 : 71년도 제1회 조리사 자격시험 실시 기획서

제 2안

주신 서울 보건학교 (총무로 3가 소재)

제작 등 건

1. 당시 시행 71년도 제1회 조리사 자격시험을 별첨 공고문과

0201-1-8A

B-1

190mm×268mm 백 상 630g/m²

1969 11 10 승인

125/5V

(서울특별시립 삼성 경업보도원 인쇄)

과 이 광역화폐 계통의 학교를 통해 광역 광역화폐 사업 확장과 서울 2종 야보니 광역화폐 주지개 바탕나라.

첨부 : 광고문 1부

제 3안

수진자 수진자 참조

참조 : 노현회장(혁생회장)

제목 : 서울특별시 지방기념도 제1회 조미사 자금사업 실시

1. 광시 지방기념도 제1회 조미사 자금사업을 광경 광고문과 같이
실시하였으나 대관하여 남아 있어 다음 광시 광고문과 조미사
주지개 바탕나라 광역화폐 사업에 주지개 바탕나라

첨부 : 광고문 1부

수진자 : 1. 노현자회부장관

2. 나 2 - 11

3. 예한 도식업 일파 중앙회장 및 본회장

4. 중학 도식업 흥회장 및 치부장

5. 경제부 통합보통 기관 학교장

6. 서울 2동 기관 학교장

제 4안

수진자 수진자 참조

참조 : 혁생회장

제목 : 광시

1. 광시 기념도 제1회 조미사 자금사업을 광경 광고문과 같이 실시
아니 관계 기관에 남아 주지시켜 다음 광시면을 할것이며, 양후 조미사를
두어야할 업소에서 조미사도 없이 광시면에도 광시아지않는 사례가 있으면
발령자는 적극 노력할것.

첨부 : 광고문 1부

수신자 서하 23 - 31

제 5 항

수신 공보실장

발신 보건 2과장

제목 물건

1. 당시 시행 71년도 제1회 조미사 자격 사업을 면밀히 고민해
같이 실시하오니 그대로 날짜 알여 등 사업에 대수 응시로 부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터를 통하여 별도로

서울특별시 73-3

(서울특별시립 상상 과학 도서 인쇄)

1. 시민 위원회 구성

가. 명칭

서울특별시 조미사 자격시험 위원회를 한다

나. 임원

- 1) 위원장 1인
- 2) 부위원장 1인
- 3) 간사 1인
- 4) 학과시험위원 과목별 2인
- 5) 실기시험위원 분야별 2인

6) 서기관 1명

7) 감독관 수업 교실별 2인

다. 구성

- 1) 본 위원회 위원장은 보건사회국장으로 한다.
- 2) 부 위원장은 보건 2과장으로 한다.
- 3) 간사는 치과 위생계장으로 한다.
- 4) 학과시험 위원은 (과목별) 보건관계 연직자 중에서

권위 있는 자로 한다.

5) 실기시험 위원은 아래들 중에서 선정한자로 한다.

가) 국영양사 양성학교 영양과 교수

나) 국영양학원장

다) 조미사 양성학교장

마) 조미사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6) 서기는 보건 2과 치과위생계 직원으로 한다.

라. 직무

- 1) 본 위원회 위원장은 시험 기간중 시험 위원과 관계진 직원 감독한다.

2) 부 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학과별 실기시험의 문제 및 답안의 선정과 지후의 책임을 진다.

3) 간사는 시험 실시에 따른 계반 관리 및 시험장을 관리하여 시험 감독관 및 수업상의 부정 행위자를 식별하고 계반 감독을 한다.

4) 학과시험위원은 ○ 담당 과목의 출제 및 채점의 책임을 진다.

5) 실기시험위원은 담당분야의 출제 및 채점의 책임을 진다.

6) 서기는 시험 전반에 대한 사무를 담당한다.

7) 시험 감독관은 시험장의 질서유지와 시험 담당자 외 내부 및 수집과 부정행위자의 적발 및 일정의 책임을 진다.

마. 시험 위원 허록

1) 학과시험위원과 실기시험위원은 벌지 서식에 의거 허록하며,

2) 기타 관계관은 허록장을 신약한다.

바. 시험 출제방법

1) 허록 받은 학과 시험 위원은 담당 과목에 대한 시험문제 50문제를 출제하되 문제당 2분 이내에 해당할수 있는 선택형으로 출제 하며 범위는 국민학교 졸업자 정도에 알맞는 문제로 한다.

2) 허록 받은 실기시험 위원은 담당 분야에 대한 시험문제 5문제를 출제하되 문제당 20~30분 초과 되며 시장 가격으로 200원 정도로 구입할수 있는 범위로서 실무에 3년정도 종사한자가 할수 있는 범위로 한다.

사. 채점 방법

1) 필기 시험은 20문제에 배점을 각 5점으로 하며, 100만점으로 하고 맞은 답만 계산하여 통인당의 감점은 없이한다.

2) 실기 시험은 위생기술 및 배선으로 구분하여 채점하여 각각 100점으로 총 배점은 300점 만점으로 하고 시험위원은 2인으로 600점 만점으로 한다.

아. 시험합격기준

1) 학과시험

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5과목 총 500점 만점으로

아고 과목당 60점 이상 총 평균 300점 이상을 득하면 합격으로 아고
300점 미만은 불합격으로 한다.

나) 총 평점이 300점 이상이라도 과목별 평균에 40점 미
만이 1과목이라도 있을 경우는 과학으로서 불합격으로 한다.

2) 실기여성

가) 실기 시험 위원 2인의 평균 총점 600점 만점으로

과목당 60점 이상 총 평균 360점 이상을 득하면 합격으로 아고 360점
미만은 불합격으로 한다.

시 월 일

15 6

(서울특별시립 사상 직업고등학교)

44/130

3. 서울특별시 시행기념도 제1회 조미사자 실시 예정서

조미사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시 시행기념도 제1회 조미사 자과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것을.

1. 사업 실시 일자 및 합격자 발표

가. 학과 사업 21. 3. 28.

나. 예술기사업 21. 4. 10. 19. 20. (4월 2주)

다. 학과사업 합격자 발표 21. 4. 10. 시청우정체육관

마. 실기사업 합격자 발표 21. 4. 30. "

2. 사업장소

가. 학과 사업 시내 통부로 3가 50 서울보건학교

나. 실기사업 상동

3. 사업과목

가. 학과 사업

나. 1) 위생법규

2) 공공 위생학

3) 영양학

4) 식품학

5) 식품 위생학

나. 실기사업

1) 한식부

2) 양식부

3) 중국식부

4) 일본식부

총 4분야 중 선택한 1분야

4. 응시 자격

가. 국민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면 암면자.

1) 기관사, 학교, 병원과 기타 후생 기관등의 급식 시설 또는
공공 기관에서 음식물의 조리 일정에 3년 이상 종사한 사실이 있다고

그 기관장이 증명 하는자

2) 음식점 영업중 1월을 통한 1일 평균 100인분 이상의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 어관, 오텔, 오막점, 주부점, 또는 바에서 음식물의 조리 일정에
3년 이상 종사한 사실이 있다고 그 시설의장이 증명하는자

5. 증시절차

가. 증시원서 접수 기관

1971년 3월 5 ~ 3월 20.

나. 증시원서 접수장소

서울특별시 보건사회국 보건2과

다. 제출 서류

1) 증시원서 서 (초정서식) 1부

2) 조리일무 종사증명 (증시원서 이면)

3) 사진 (3, 4센티, 할모 상반신) 4매

4) 수수료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200원

마. 증시원서 배부 및 오적대조

1) 조리사 자격시험 증시원서는 법정 서식과 같이 인쇄배부한다.

2) 오적표본 또는 주민등록증 건강진단서는 면현서류 간호과

방안에 의거 물증제출 서류에서 생략하고 등 시험 합격자가 제출하는 조리
사 면여 신청할 확인 처리로 한다

마. 지참도구

1) 학과시험 불편또는 만년필 (정식, 음식)

2) 실기시험 식도, 희생과 허성도 행주 손수건

마. 수험료 교부 및 대조

1) 수험료는 원서접수시, 고부하고, 시험당일 08:00부터.

시험장에서 헌서에 첨부된 사진 및 수험료와 본인을 대조하여 시험장에
지정된 좌석에 앉으므로 하되 수험표는 학과 풍부에 부착하고
수험표를 한다.

사. 학과 시험

- 1) 학과시험은 시험과목 5과목 1교시에 3과목을 2교시에
2과목을 하실시하며 문제당 배정시간은 2분으로 하고 09:00 (제1교시)
와 11:30 (제2교시)에 높은 수험생은 수업을 끊어한다.

아. 실기시험

- 1) 실기시험은 본야별 순차적으로 실시하되 문제당 배정
시간 30분 내외로 하고 09:00부터 실시한다

자. 합격자 발표

- 1) 합격자 발표는 시정후정에 계시 발표한다
- 2) 학과시험 합격자에 안하여 실기시험을 수업할수 있으
며, 실기시험합격자는 최종합격자로 한다.

차. 합격자 등록

- 1) 최종 합격자는 1971. 5. 3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
- 2) 등록된 자에 대하여는 조비사자격시험 합격증을 고부
하며, 면어신청 접자를 안내한다.

즉. 면어신청

- 1) 조비사 자격시험 합격증을 고부 받은 자는 1971년 5. 1
부터 5. 30 까지 사이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조비사
면어를 신청하고 면어증을 고부 받아야 한다.

2) 구비서류

가. 신청서 1매

나. 주면등록 또는 호적초보 1매

다. 건강진단서

마) 사전 2 대

마) 수수료 1,000 원 (시수 일증자)

3) 만약에 기관내에 면허신청이 없을 때에는 면허취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6. 공고 방법

가. 일반신문 1 개사에 1회 공고 한다.

나. 공고 안내장

7. 세입 예정의

가. 공고 후 용지자 등수에 의거 산을 한다.

(용지자등수 용지수수료) (한국자연수수료)

- 세입액

8. 소요 예산

가. 용지자 등수에 의거 소요 예산을 산을 요구한다

나. 자격사업 신문공고로는 다음과 같이 집행한다.

신문 공고로

종 류	초요금액	산을 근거	지 품 비 율	지 품 방 법	단 가
1	432,000 원	160평 × 180평	1,000 원	1회	75,600 원
1					
1					

다. 본 사업을 실무사업용 재료구입에 대하여는 소요 예산
법위내에서 전도 자금으로 집행한다

예산비율 : 보건비 위생관리비 식품위생비 수수료율

수수료율

서울특별시 고고 제 35

조미사 자금사업 실시

조례사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71년도 제1회
조례사 자격 시험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z_1, z_2, z_3 \in \mathbb{C}$$

서울특별시장

1. 시험 실시자

법무성장 가: 제 1 차 시험 (학과시험)

1) 월시 : 71, 3. 28

2) 장소 : 서울특별시 종

3) 학생자료집 일시 및 장소 :

제 2 장 나. 제 2 차 시기 시어 (학과 시어 학습)

제 1) 이식 21 4 18

3) 차: 차수 차등 차등

3) 장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 주제 : 관리자에게 전달

3) 한국사람의 인지 및 장소

4) 학구자동화 및 디어신적

2. 시험 : 과목

가. 학과시험 : 위생법규, 중증위생학

나. 실기시험 : 한식, 양식, 중국식, 음

3. 용시자격

가. 국민학교 이상의 학교를 들어보자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기술자하고 벼랑 흙세

가족에서 육식품의 죽 텴퍼를 예상하는 의사 조언

의자이 죽여 학노자

2) 음식점 영업점 1영업점 10

서울시립도서관

제출하는 식당은 면허증을 끊거나 면허를 끊은 이후에 3년 이상 종사한 사실이 있다고 그 시설의 장이 증명하는 자.

4. 응시 절차

가. 응시 원서 접수 기간 및 접수 장소

1) 접수 기간 : 71. 3. 5. ~ 3. 20.

2)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보건사회국 보건 2과

나. 제출 서류

1) 응시원서(초정서식) 1부

2) 조맥업무 종사 증명(응시원서 이면)

3) 사진(3,4센티, 매표 상반신) 4매

4) 수수료(서울특별시 수입증지) 200원

다. 지참 도구

1) 학과 사업 : 불펜 또는 만년필(청색 또는 흑, 죄)

2) 실식기 사업 : 식도, 위생복, 위생모, 향주, 손수건

5. 기타 사항

가. 응시자는 사업 당일 08:00까지 사업장에 집합하여 사업 간접관의 확인을 받고 사업장에 입장하여야 하여야 한다.

나. 기타 문의 사항은 당시 보건 2과(72)- 9441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 루 장

성 명

국가를 당시 시행 1971년도 제1회 조례사 자격 사업의
사업 위원으로 위촉함

1. 당당 짜목

1971.

서 울 특 별 지 장

서 울 특 별 시 13-13 (서울특별시립 우편 사업부) 13
161